

韓國式 社會報告制度의 定立方案 -社會的 貸借對照表(Bilan Social)를 中心으로-

朴 基 賛*
崔 正 徹**

〈目 次〉

I. 序 論	IV. 우리나라의 勞動統計調查
II. 社會報告制度 導入의 必要性 : 勞使間의 情報共有	V. 「提案된 社會報告指標」와 勞動統計 指標와의 比較研究
III. 프랑스의 Bilan Social	VI. 結 論

I. 序 論

기업이 사회로부터 그 정당성을 인정받느냐 하는 여부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존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현대기업은 정당성의 근거 상실과 사회적 비난고조에 따른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최종태, 1989 ; 박기찬, 1990).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의 기업들도 사업활동상 '정당성의 위기(crisis of legitimacy)' 문제가 강하게 부각되어 왔다. 특히 정치적 민주화시대를 거치면서 그간 누적되어 온 수 많은 사회적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해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IMF체제하의 경제적 난국은 물론, 노조 및 진보적 지식인에 의하여 재벌의 구조조정문제가 제기되는 등 한국기업은 총체적인 정당성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당성의 위기'가 부각되는 이유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의 수 및 규모의 급속한 증대와 함께 기업의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크게 증가한데 반해 기업의 사회적 책

* 인하대학교 경상대학 경영학부 교수

** 인천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경영학박사

임 및 사회적 반응의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신유근, 1994). 그러므로 정당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 및 제반 이슈를 명확히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기업의 사회적 정책 및 사회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개념적 모델과 구체적 평가지표의 도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의 기반으로써 사회보고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사회보고제도 도입의 법적근거가 되는 노사협의제도에 관하여 살펴보고 둘째, 사회보고제도가 유일하게 법제화되어 있는 프랑스의 Bilan Social(사회적 대차대조표) 제도를 소개한 후 셋째, 프랑스의 Bilan Social 제도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보고지표를 제시하도록 하였다.

II. 社會報告制度 導入의 必要性 : 勞使間의 情報共有

1. 노사협의제의 의의

사회보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보고사항과 관련되어 있다(최종태, 1996). 즉 사회보고의 제도화는 노사간에 정보공유를 증진시킴으로써 노사간의 갈등완화 및 노사간 정보공유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산업평화의 유지 및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근로자참협법 제1조, 제3조 ①). 노사협의제의 취지는 노사관계를 대립적 관계에서 협조적 관계로 지향하게 하려는 것이므로, 보통 노사협의제라 하면 근로자들이 경영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경영 전반에 대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노사협의제가 요청되는 이유로는 다음의 두가지 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는 노사관계의 근대화라는 사회구조 개혁의 측면이고, 둘째는 경영합리화에 의한 생산성 향상이다. 전자는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고도의 민주화, 후자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합리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김형배, 1997).

그러므로 노사협의제의 의의는 본질적으로 사용자의 배타적 경영권을 생산활동에 있어서 근로자들의 기능적 역할과 조화시켜 노사간 협력관계를 통한 근로자들의 기업경영 참

여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경영참가를 통한 노사간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경영과 관련된 정보공유가 동시에 인정되어야 한다.

2. 현행 노사협의회상의 사회보고관련 사항

1) 노사협의제도의 연혁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노동법개정의 역사와 운명을 같이해 왔다. 즉 1963년 대 폭적인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조합법' 제6조 내에 노사협의회제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1973년과 1974년의 노동조합법 개정시에 본 규정이 확대·구체화되었다. 1980년 12월 31일의 노동조합법 개정시에서는 '노사협의회법'이 독립된 법률(법률 제3348호)로 제정되었으며, 1987년 11월 28일에 또 한번의 개정이 있었다(법률 제3968호).

한편 1996년 6월 9일에 발족된 노사관계개혁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참고한 1996년 12월 31일의 개정에서는 종래의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였고(법률 제5247호), 1997년 3월 13일에 동 법률의 전면 개정이 있었다(법률 제5312호)¹⁾.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그 설치가 강제된다(근로자참협법 제4조 I 본문).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4조 I 단서; 施 제2조 I).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일정 벌칙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동법 제30조 :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²⁾.

1)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1997년, pp.741-768

2) 구법에서는 일부 업종과 상시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되,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업종과 근로자 수를 불문하고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노협법 제4조 I : 施 제2조 I · II). 그러

3) 운영

노사협의회는 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며(근로자참협법 제12조 I), 이를 위반한 때에는 벌칙이 적용된다(근로자참협법 제32조 : 200만원이하의 벌금).

4) 노사협의회의 임무 및 사회보고제도 도입의 필요성

(1) 협의사항

우선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함께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근로자참협법 제19조).

- | | |
|---|--------------------------|
|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
| ③ 노동쟁의의 예방 |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
| ⑤ 안전·보건·기타 작업환경 | ⑥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
| ⑦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 ⑧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 |
| | ⑨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 |
| ⑩ 신기계·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 ⑪ 작업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
| ⑫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 ⑬ 근로자의 복지증진 |
| | ⑭ 기타 노사협의에 관한 사항 등 |
- 이들 사항에 관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단순 의견교환에 그치지 않고, 의결활동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근로자참협법 제19조 II).

(2) 의결사항

한편 사용자가 반드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비로소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근로자참협법 제20조).

- ①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나 현행법에서는 업종 및 노동조합의 설립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일률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근로자참협법 제4조 I : 施 제2조 I) 노사협의회의 설치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노동조합의 설립과는 관계없이 실질적인 종합원대표기구로서 노사협의회의 성격을 명백히 하였다.

- ②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 ③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 ④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 ⑤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등

이들 사항이 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하면 사업주는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가 신속하게 근로자(종업원)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고 있다(근로자참협법 제22조). 또한 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근로자참협법 제23조),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근로자참협법 제30조 ②).

(3) 보고 · 설명사항

한편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보고 · 설명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근로자참협법 제21조 I : 시행규칙 제6조).

- ①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단기 및 중 · 장기 경영계획
 - 경영실적과 전망
 - 기구개편
 - 사업확장 · 합병 · 공장이전 및 휴 · 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 ②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 사업부서별 목표 및 실적
 - 신제품개발 및 기술 · 기법의 도입
- ③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인사방침
 - 증원 또는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 모집 및 훈련
- ④ 기업의 경제적 · 재정적 상황
 -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사항

- 자산현황과 운용현황
- 부채현황과 상환현황
- 경영수지현황

(5) 기업의 경영과 관련된 사항

- 협의회에서 보고하도록 의결된 사항
-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경우 등

이처럼 1996년과 1997년의 개정에서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을 확대함과 아울러 사용자의 보고사항에 관한 근로자위원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이들 조항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업경영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정기적(1년 단위)이며 포괄적인 보고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우리 나라의 경우 사회적 사항이 정기적이고 포괄적인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낙후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입법적 하자이자 절름발이식 사회보고체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보고내용 및 보고방법을 제도화하기 위한 선진모델로써 프랑스의 Bilan Social방식을 벤치마킹하도록 하였다.

III. 프랑스의 Bilan Social

1. Bilan Social의 의의

1)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제화된 사회보고제도

1960년대 이후부터 전개된 사회지표운동(social indicators movements)³⁾에 의하여 각국에서는 국가수준에서는 사회지표체계를 확립하여 사회보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70년대에 와서는 기업수준에서도 사회지표체계의 확립 및 보고제도를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유일하게 프랑스에서만 1977년 법제화에 성공하여, 1979년부

3) 바우어(R. A. Bauer)가 1966년에 『사회지표(Social Indicators)』를 출간, 던칸(Duncan)에 의해서 1969년에 처음으로 『사회지표운동』이라는 명칭이 사용됨.

터 기업이 스스로 보고하는 사회보고(social reporting)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다(Peretti, 1991).

우리 나라도 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대한 평가·보고기준·감사기준 및 이를 강제하는 강제법규와 자율적인 내부규정은 예외없이 법제화되어 있음을 비추어 볼 때⁴⁾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제도가 법제화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법제화되어야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내부 사회적 성과에 대한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의 대상 범위는 크게 내부 사회적 성과와 외부 사회적 성과로 구분할 수 있으며(박기찬, 1999), 기업의 내부 사회적 성과와 기업의 외부 사회적 성과를 포괄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전체를 범위로 하여 사회적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우리나라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도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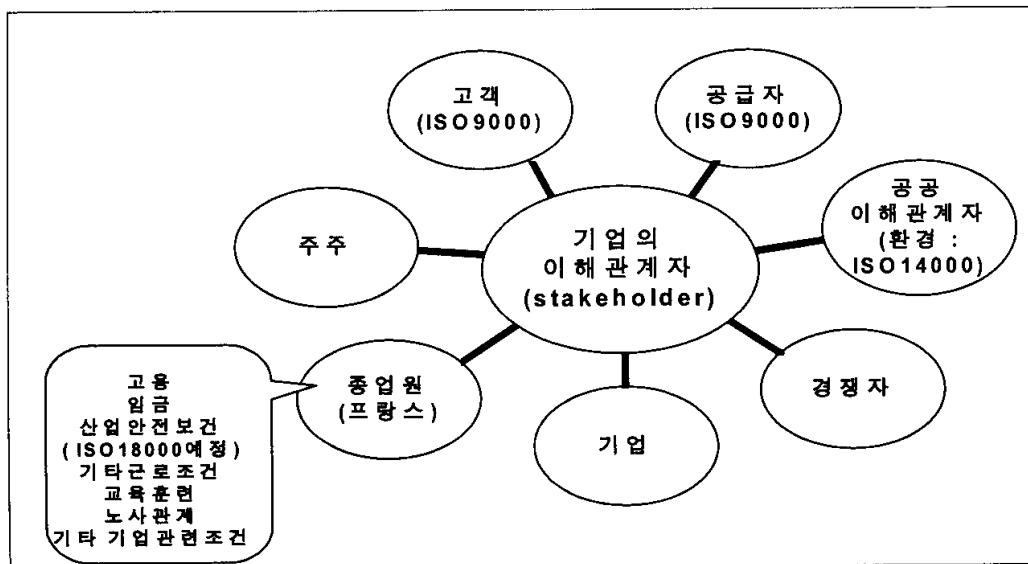
이에 비하여 프랑스의 Bilan Social은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영역 중에서 기업의 내부 사회적 성과영역인 종업원에 한정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고객·납품업자·환경·공권력·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 등 기업의 외부 사회적 성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표출되고 있다⁵⁾.

한편 국가별 제도는 아니지만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인증시스템(ISO 9000), 환경경영인증시스템(ISO 14000) 및 산업안전보건인증시스템(ISO 18000 : 예정)과 같이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영역 중에서 일부를 모듈화시켜 적용하는 사례도 있다.

4) 감사전문직 설치(1953년 계리사법 시행령), 한국계리사회 발족(1954년 12월), 기업회계기준(1958년), 회계감사기준 제정(1961년), 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실시(1963년 개정 증권거래법) 계리사법 폐지 및 공인회계사법 제정(1966년 7월) 등의 제도화를 통하여 정립되었다.

5) J. Igalel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pp.108-109

〈그림 1〉 기업의 사회적 성과 평가영역(이해관계자 분석모델)



3) 기업 스스로 보고하는 사회보고제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는 주체 및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보면, 프랑스의 Bilan Social은 기업 자체적으로 사회적 성과를 평가·보고하는 방식으로써, 사회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3자에 의한 사회감사(audit social)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경영인증시스템(ISO 9000), 환경영인증시스템(ISO 14000) 및 산업안전보건인증시스템(ISO 18000)도 제3의 기관이 감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으나, 공개적인 사회보고제도를 갖고 있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편 미국·캐나다·독일·일본 등에서는 기업의 보고서·설문조사자료·국가기관 등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제3의 기관 또는 연구자 등이 직접 분석·평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정의연구소의 경제정의지수(KEJI Index)도 이에 해당하며, 노동통계에 의거한 각종 노동통계보고서 역시 이러한 분류에 포함될 수 있다.

2. 프랑스 Bilan Social의 지표체계

Bilan Social에서의 지표는 ①고용 ②임금 ③산업안전보건 ④기타 근로조건 ⑤교육훈련 ⑥노사관계 ⑦기타 기업관련조건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지표의 수는 Bilan Social이 작성되는 수준과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공업-농업 분야의 예를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80개에서 171개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세부지표에 대해서는 〈부록 1〉 참조)6).

〈표 1〉 Bilan Social의 작성수준과 규모에 따른 지표의 수

규모(종업원수)	기업		사업장		
	300	2000	300	750	2000
항목	Bilan Social에 공표해야 하는 기본지표의 수				
고용	18	19	34	35	36
임금	9	9	6	7	8
산업안전보건	6	6	20	20	20
기타 근로조건	5	5	20	21	22
교육훈련	4	4	9	9	9
노사관계	4	4	12	12	12
기타 기업관련조건	4	4	2	2	2
소계	50	51	103	106	109
전체항목	Bilan Social에 공표해야 하는 보조지표의 수				
총계	30	30	62	62	62
	기본지표와 보조지표의 총합				
	80	81	165	168	171

자료 : J. Igalel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p.27

한편 Bilan Social에서는 기업에 제공된 정보지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서 점진적으로 내실화를 기해 왔다. 1979년부터 기업자율 또는 기업위원회(comité d'entreprise)에서 제시된 요구사항에 의해 제공된 지표를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제반

6) J. Igalel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UF, 1997, pp.17-28 및 Crédit Commercial de France의 Bilan Social(1995)과 France Telecom의 Bilan Social (1993).

정보가 구축되어 왔다. 이처럼 현재 사용되고 있는 Bilan Social 지표들은 거의 20년 동안 기업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법과 정책, 그리고 실행에 영향을 끼친 변화와 혁신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박기찬, 1999).

3. 우리나라에 적합한 사회보고지표체계의 개발(Bilan Social을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고, 사회의 주요 구성주체로서 기업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효율성의 논리(logic of efficiency)에 입각한 성과산출만 추구해서는 안 되며, 기업의 내외부 고객(내부종업원 및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사명은 경제적 성과창출은 물론 만족성의 논리(logic of satisfaction)에 입각한 공정경영 및 책임경영활동을 실현하는데 두어야 한다(최종태, 1984).

따라서 우리 나라 역시 기업의 사회적 성과산출을 측정하는 도구가 필수적이라는 전제 하에 프랑스의 Bilan Social에 대응하여 종업원에 한정된 우리나라 사회보고지표를 정리한 결과 다음 <표 2>와 같이 나타났다(상세한 지표는 <부록 2> 참조)⁷⁾.

<표 2> 우리나라의 사회보고지표 요약(종업원 항목에 한정)

항목	사회보고 지표	비율(%)
고용	45	25.4
임금	23	13.0
복리후생	15	8.5
산업안전보건	46	26.0
기타작업조건	13	7.3
교육훈련	10	5.7
노사관계	25	14.1
계	177	100.0

즉 종업원집단에 한정하여 제안된 사회보고지표 177개는 고용세부항목(45개 개별지표), 임금세부항목(23개 개별지표), 복리후생(15개 개별지표), 산업안전보건(46개 개별지표), 기타 작업조건(13개 개별지표), 교육훈련(10개 개별지표), 노사관계(25개 개별지표)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고용과 산업안전보건의 개별지표를 합하면 총 91개로서 전체 177개 중 51.4%를 차지하고 있다.

7) 상세한 지표개발과정은 최정철, 한국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1998,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그러므로 지표의 양적인 측면만 고려할 경우, 고용과 산업안전보건 분야가 종업원항목에 한정한 사회적 성과 중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프랑스의 Bilan Social을 상호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프랑스 Bilan Social의 지표 비교

구분	고용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보건	기타작업 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계
사회보고지표	45	23	15	46	13	10	25	177
Bilan Social	39	11	3	33	11	7	11	115
BS외 추가지표	6	12	12	13	2	3	14	62
추가율(%)	13.3	52.2	80.0	28.3	15.4	30.0	56.0	35.0

한국의 경우, 임금과 복리후생에 대한 개별지표가 부족하므로 일부 지표의 추가가 요구되며, 노사관계 세부항목으로써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8개의 개별지표가 추가되었다. 반면에 고용 및 기타작업조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표의 추가가 요구되지 않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의 경우에는 프랑스 Bilan Social의 지표가 대부분 유용하였으나, 산업재해의 사후분석 차원에서 사고자의 특성별 분류에 관한 8개의 개별지표, 그리고 교육훈련의 경우에는 한국에 특유한 개별지표인 기업부설학교 및 산업체 위탁교육제도에 관한 지표가 추가되었다. 물론 이들 지표 역시 Bilan Social에 근간을 두고 우리나라의 실태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리된 것으로써 계속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IV. 우리 나라의 労動統計調查

노동통계는 일차적으로 양적인 지표 또는 질적인 지표로 측정되고 다시 계량화되어 통계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것으로서, 노동통계를 활용하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진단(social diagnosis) 및 사회적 개선(social improvement)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통계는 개별적·부분적으로 작성되어 익명으로 보고되는 것이 대부

분이며, 전국·지역별·산업별로 분석되는 노동통계조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⁸⁾.

그러나 기업의 사회적 성과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고제도 및 지표의 부족으로 사회적 사실(social fact)들이 정보화되어 통계자료로 주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현상에 대한 종합적 파악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개별기업이 스스로 작성하여 공시하는 사회보고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통계조사관련 지표들의 통합가능성부터 검토할 것이 요구된다.

1. 노동통계현황 분석

Bilan Social과 대비하여 우리 나라의 노동통계 역시 노동력·임금·산업재해·직업훈련·노사관계 및 기타 작업조건 관련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노동력관련 노동통계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경제활동 인구조사로부터 취업자 및 실업자, 연령별·성별·산업별 취업자의 구성을 나타내는 경제활동인구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체노동실태조사로부터는 근로자의 취업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한편 이들 조사자료를 모집단으로 하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로부터는 입직자와 이직자의 수 및 근로시간 등이 작성되고 있다. 기타 노동부에서 조사하는 노동력유동실태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 및 영세사업장근로실태조사, 한국경총에서 조사하는 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하는 중소기업 조업상황조사와 중소제조업기술개발 및 인력실태조사 등이 있다.

노동부에서는 장애인고용정책수립을 위하여 1996년 2월 22일부터 30인 이상 되는 사업체(1996년 1월기준 40,717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⁹⁾.

둘째, 임금관련 노동통계는 월별 노동통계조사로부터 근로자임금을 조사하여 산업별 월평균임금, 근로시간, 근로일수 등의 통계를 작성하고,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등을 통해 사업체 근로자의 노동특성별 임금 및 근로시간을 파악하여, 직종별·산업별·사업체규모별·학력별·경력년수별·연령계층별 임금 및 임금계층별 근로자수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8) 통계청, 주요통계지표 해설, 1998, pp.85-106

9) 통계청, 한국통계조사현황, 1996, pp.182-183.

기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사업체임금실태조사, 한국경총의 임금조정실태조사, 대한상의의 제조업근로자 모델별 임금조사,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대한건설협회의 건설업임금실태조사 및 한국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산업재해관련 노동통계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재해 및 질병의 예방과 재해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로는 산업자원부에서 월별로 탄광 및 광산의 쟁내외에서의 재해상황보고, 즉 행정보고통계로 작성되는 광산재해통계와 노동부에서 수시로 재해유발시에 인적사항, 재해자수, 재해원인 및 결과, 상해종류를 재해발생 사업체로부터 보고받아 작성하는 산업재해통계 등이 있다.

광산재해통계는 전년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매년 3월 산업자원부에서 분석·발표하고, 산업재해분석은 노동부에서 전년의 통계를 분석하여 매년 하반기에 발표하고 있다. 직업병에 관한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사업체를 대상으로 연령별·질병별·남여별·질병자 현황 및 산업별·일반질병별·직업성질병별 현황을 작성하여 근로자의 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실시 상황보고가 있다.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사업종류별 보험적용 징수상황보고,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상황보고 및 의료기관별 진료비지급 현황보고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 관련해서는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상황보고 등이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관련 노동통계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노동통계조사가 없으며, 보고에 의존하여 통계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노동력과 임금과 관련된 노동통계와 차이가 있다.

넷째, 직업훈련관련 노동통계는 직업훈련분담금신고 및 훈련비용정산시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거하여 노동부 자체내의 행정통계로 작성되고 있다.

다섯째, 노사관련 노동통계는 노동부 자체의 행정통계로 작성되고 있으며, 기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조사하는 노사협조실태조사가 있다. 기타 기업관련조견, 즉 기업의 복지와 관련된 노동통계로서 노동부가 조사하는 기업체노동비용실태조사가 있다.

2. 노동통계에 대한 종합분석

이상의 노동통계현황을 우선 작성주기별로 살펴보면, 매월·수시·분기·반기·연별·2년 단위 등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매월·수시·분기단위의 조사는 시시각각 변하는 노동관계사항을 파악하는 유용성이 강조될 수도 있으나, 반기별·연별 및 2년 단위의 노동통계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단신 근로자생계비조사를 제외하고는 Bilan Social처럼 1년에 한 번 기업 스스로 작성하는 사회보고서로 통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 4〉 한국 노동통계의 작성주기별 현황

작성주기	통계명칭	통계수
월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노동통계조사, 중소기업상황조사 ▶ 광산재해통계, 산업재해보험급여지급상황보고 	4
수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조사 ▶ 노사협조실태조사 	2
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 ▶ 사업종류별 보험적용 징수상황보고, 의료기관별 진료비지급 현황보고 	3
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 건설업임금실태조사 	2
연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노동력수요동향조사, 영세사업장근로실태조사, 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장애인고용실태조사 ▶ 단신근로자생계비조사,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노동실태조사, 임금조정실태조사, 제조업근로자모델별임금조사, 중소제조업임금실태조사,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 ▶ 근로자건강진단실시상황보고 ▶ 기업체노동비용실태조사 	14
2년단위	▶ 중소제조업기술개발 및 인력실태조사	1

둘째, 조사기관측면에서 살펴보면, 노동력 및 임금과 관련된 통계는 여러 조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사사항을 비교해 보면 이들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동부외의 다른 기관의 노동통계조사도 비교분

석하여 차이점을 수용한다면 굳이 여러 기관에서 조사하여 비용낭비 및 통계오차를 유발 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산업별 분류에 따른 통계는 전산업에 걸친 산업구조조정이 시급한 한국의 상황에서 제조업 또는 건설업과 엔지니어링업체만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넷째, 규모에 따른 통계의 경우에도 산업구조 조정에 따라 고기술의 중소기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분리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다.

다섯째, 반면에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는 산업구조조정 및 실업문제에 대한 정책대안 수립을 위하여 전산업으로 시급히 확장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조사대상 기업(사업)체 입장에서 보면, 기업 실무자들은 수차에 걸쳐 유사한 통계를 반복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므로, 노동통계를 통합하여 작성한 사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 할 경우, 작성비용의 절감과 정보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측된다.

3. 주요 노동통계조사의 통합화 방안

한국 노동통계의 통합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우선 주요 노동통계조사 중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 노동력수요동향조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및 기업체노동비용조사를 근간으로 통합될 것이 요구된다. 이러한 주요 노동통계조사는 대상 사업장에서 차이점이 있으나, 상용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치시키고, 의무적으로 사회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체와 비대상사업체를 구분하면 통합화가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

한편 사업체 특성과 종업원 특성에 관한 조사사항은 상호 유사성이 높으며 단지 근로자의 종류를 구분하는 관점만 상이하므로, 근로자의 종류 구분을 세분화하여 일치시키면 일관된 통계치를 가질 수 있게 된다.

V. 「提案된 社會報告指標」와 「勞動統計指標」와의 比較研究

1. 비교연구의 의의

프랑스의 Bilan Social 지표를 토대로 하여 우리 나라 현실에 적합하게 변용시켜 제시한 사회보고지표가 과연 우리 나라에 도입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주요 노동통계조사상의 지표들과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요 노동통계조사의 지표와 노동통계조사를 종합하여 노동통계연감의 지표 및 사회지표 중 노동과 관련된 항목의 지표도 함께 고려하였다.

첫째, 노동통계연감은 Bilan Social 관점에 입각한 우리 나라 기업사회보고의 종합적 분석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개별기업의 자발적인 사회보고방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업별로 다양한 분석자료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연구자 및 기업 실무자들이 통계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엄청난 불편이 따른다는 한계가 있다.

둘째, 사회지표는 사회보고를 국가수준에서 제도화한 것으로 우리 나라의 경우는 통계청에서 매년 “한국의 사회지표”로 발간·공표하고 있다. 즉 사회지표는 사회적 상태를 총체적이고도 집약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지표”的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들 노동통계연감이나 사회지표 공히 노동통계 등을 활용하여 작성되는 보고서로서 기업수준에서 작성되는 사회보고지표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필요성이 있다. 즉 기업의 사회보고지표 중에는 기초자료 그대로의 지표가 있는가 하면,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담는 지표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노동통계조사, 노동통계연감 및 사회지표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양자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표가 있다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우리나라 사회보고제도의 제도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기업들이 오랫동안 스스로 작성하여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는 노동통계조사내에 이미 제안된 사회보고지표 중 상당수의 지표가 있다는 것을 밝힌다면 사회보고의 제도화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표는 없더라도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표의 개발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개별지표별로 우리나라의 제도적(법적) 근거를 밝히는 작업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2. 비교분석의 결과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우리 나라의 노동통계조사, 노동통계연감 및 사회지표를 비교한 결과, 177개 지표 중 55.9%에 해당하는 99개의 지표가 노동통계조사, 노동통계연감 및 사회지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세부사항은 <부록 4> 참조).

또한 임금과 복리후생부분에서 대체가능한 지표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노사관계부분이 대체가능한 지표가 가장 적게 나타났다(<표 5>참조).

<표 5> 제안된 사회보고지표 중 대체가능한 노동통계지표

구분	고용	임금	복리후생	산업안전 보건	기타작업 조건	교육훈련	노사관계	계
사회보고지표	45	23	15	46	13	10	25	177
노동통계 등	25	17	14	23	6	6	8	99
대체율(%)	55.6	73.9	93.3	50.0	46.2	60	32.0	55.9

한편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우리 나라의 제도적(법적) 근거를 비교분석한 결과 <표 6>에서와 같이 이미 제도적 근거가 상당히 확보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제도적 근거가 있는 경우가 111개로 177개의 개별지표 중 6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가능한 지표가 없는 경우는 42개로 23.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도적 근거도 없고 대체가능한 지표도 없는 경우가 36개로 2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제도적 근거가 있는 42개의 개별지표에 대한 지표개발이 시급하다 할 것이며, 제도적 근거와 대체가능지표가 없는 36개 개별지표의 경우에도 지표의 개발을 서두른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종업원항목에 한정된 사회보고의 제도화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세부항목 중 산업안전보건·노사관계·교육훈련 등은 제도적 근거가 있으면서도 대체지표가 없는 개별지표의 비율이 각각 41.3%, 40.0%, 30.0%로 나타나므로 이를 분야부터 지표개발 및 제도화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6)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노동통계조사 등 지표 및 제도적 근거 비교분석 결과(단위 : 개, %)

세부 항목	세세항목	개별지표	대체기능 지표 있는 경우	제도가 있는 경우	제도가 있고, 지표 있는 경우	제도가 있고, 지표 없는 경우	지표와 제도가 모두 없는 경우
1. 고용	11. 인원	9	8	2	2	2	1
	12. 외부근로자	5	2	4	2	2	1
	13. 당해 채용인원	5	5	5	5	1	
	14. 당해 이직인원	9	8	2	1	2	4
	15. 당해 승진과 전환배치	4					
	16. 당해 휴업	2		2		2	
	17. 장애인	2	1	1	1		1
	18. 결근율	9	1				8
소계		45	25	16	11	5	15
백분율		100	55.6	35.5	24.4	11.1	33.3
2. 임금	21. 임금총액	9	9				
	22. 임금계층	2	2				
	23. 임금계산방식	3					3
	24. 제수당	3	3	2	2		
	25. 외부근로자지급총액	1		1		1	
	26. 퇴직금	5	3	5	3	2	
	소계	23	17	8	5	3	3
	백분율	100	73.9	34.8	21.7	13.0	13.0
3. 복리 후생	31. 복리후생비총액	2	1				1
	32. 현물지급총액	2	2				
	33. 법정복리비	7	7	7	7		
	34. 법정외복리비	3	3	3	3		
	35.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1	1	1	1		
	소계	15	14	11	11		1
	백분율	100	93.3	73.3	73.3		6.7
	41. 안전사고	8	6	7	6	1	1
4. 산업 안전 보건	42. 원인별 사고분류	6		6		6	
	43. 특성별 사고분류	7	7	7	7		
	44. 안전관리비용	3	2	2	2		1
	45. 작업환경	9	2	7	2	5	2
	46.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	8	6	8	6	2	
	47. 산업보건의	4		4		4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1		1	
	소계	46	23	42	23	19	4
	백분율	100	50.0	92.4	50.0	41.3	8.7
5. 기타 작업 조건	51. 근로시간	9	5	7	5	2	2
	52. 근로조직과 내용	3	1				2
	53. 근로조직의 변형	1					1
	소계	13	6	7	5	2	5
	백분율	100	46.2	53.8	38.5	15.4	38.5
	61. 교육훈련비총액	4	4	4	4		
	62. 교육훈련인원과 시간	5	2	4	2	2	1
	63. 실습	1		1		1	
6. 교육 훈련	소계	10	6	9	6	3	1
	백분율	100	60.0	90.0	60.0	30.0	10.0
	71. 노동조합	8	5	8	5	3	
	72. 노사협의회	5	1	5	1	4	
	73. 정보와커뮤니케이션	5		1		1	4
	74. 정당한 절차	7	2	4	2	2	3
	소계	25	8	18	8	10	7
	백분율	100	32.0	72.0	32.0	40.0	29.6
합계		177	99	111	69	42	36
백분율		100	55.9	62.7	39.0	23.7	20.3

VI. 結論

본 연구는 우리 나라 역시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와 관련된 사회보고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①사회보고제도 도입의 법적근거 파악 및 프랑스식 Bilan Social의 벤치마킹작업을 통하여 ②우리 나라의 현실을 반영한 사회보고 지표체계를 도출하였다. ③도출된 사회보고지표는 우리 나라 노동통계조사·노동통계연감·사회지표와의 비교분석 및 ④우리 나라 노동관계법과의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우리 나라 노사협의회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노사간 정보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정보 및 지표)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프랑스의 Bilan Social지표 115개를 중심으로 우리 나라 기업의 사회적 성과 중 종업원항목에 한정된 177개의 지표를 도출하여 「한국식 사회보고지표」로 제안하였다.

셋째, 우리 나라 노동통계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연단위로 작성되는 노동통계가 14종류나 되므로, 사회적 비용절감 및 중복작업의 방지를 위하여 이를 통합한 사회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넷째, 도출된 사회보고지표와 노동통계조사·노동통계연감 및 사회지표와의 비교분석 및 도출된 사회보고지표와 노동관계법과의 비교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177개 지표 중 79.6%에 해당하는 141개 지표가 대체가능지표로써 이미 존재하거나 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우리 나라에서도 사회적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종업원항목에 대한 사회보고제도의 도입기반은 제도적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단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각종 제도를 체계적으로 종합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이 핵심문제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도를 체계적으로 종합화하기 위해서는 종업원항목과 관련된 사회보고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으며, 그 기본안을 부록에 예시해 두었다.

**부록1. 프랑스의 Bilan Social지표(공업 및 농업분야 사업장)
(1977년12월8일 시행규칙 추가조항 B)**

항목	지표	비고
1. 고용	11 인원 111 12월 31일 기준 전체 인원 112 상시 인원 113 12월 31일 기준 확정기간 근로계약자격의 근로자수 114 당해 월평균 인원 115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성별 분류 116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연령별 분류 117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근속년수별 분류 118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국적별 분류 프랑스인..... 외국인..... 119 12월 31일 전체 인원의 세분된 자격 구조별 분류	
12 외부 근로자	121 실습생수 (애플, 대학) 122 파견 근로자의 월평균 수 123 파견 근로 계약의 평균 기간	노동법전 L.124-1
13 당해 채용	131 불확정기간으로 계약된 채용자 수 132 확정기간으로 계약된 채용자 수 133 계절 근로자 채용자 수 134(*) 25세 미만 채용자 수	
14 이직	141 이직 전체 142 사직 수 143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수 : 정년퇴직과 조기 퇴직 포함 144 기타 사유로 인한 해고 수 145 확정기간 계약 만료 146 수습기간 중의 이직 147 다른 사업장으로의 이동 148 정년퇴직과 조기퇴직 149 사망	
15 휴업	15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근로자 수 15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전체 시간 보상된 시간..... 보상되지 않은 시간.....	
16 장애인	161 당해 3월 31일 기준 장애인 수 162 당해 3월 31일 기준 사업장에서 일어난 근무시 사고에 의한 장애인 수	노동법전 R. 323-51
17 결근율	171 결근일 수 이론적 근무일 수 172 결병에 의한 결근일 수 173(**) 결근기간별 질병 분류 174 근무시와 출퇴근시 사고로 인한 결근일 수 175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수 176 허용되는 휴가로 인한 결근일수 (가족사, 여자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 휴가.....) 177 기타 원인으로 인한 결근일수	

항목	지표	비고
2. 임금	<p>21 임금총액 지표 211과 212 또는 지표 211'을'과 212'을' 중 선택 그러나 근로자 2천명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11을과 212을을 사용 211 연간임금총액 월평균인원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분) 212 12월의 평균임금(상시인원), 월단위가 아닌 정기 수당은 제외 -기준 40시간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분) 211'을' 월평균임금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분) 212'을' 임금신고서를 기준하여 월단위가 아닌 정기수당 비율 (지표 119에 따라 직급별로 남녀를 구분) 213(*) 임금표</p>	
	22 임금 계층 지표 221과 221을 중 선택 221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의 임금평균과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의 임금평균의 차 221'을' 엔지니어와 간부(고급 간부와 경영자 또는 그와 상응하는 자 포함)의 임금평균과 생산직근로자(또는 그와 상응하는 자)의 임금평균의 차	
	23 임금계산 방식 231 임금이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비율 232 정해진 근무시간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비율	
24 제수당	<p>241(**) 사업장에서의 사회적 혜택 : 각 항에 대해 보장수준명시 질병으로 인한 보험 무료기간..... 질병 보상..... 휴일 보상..... 해고예고와 보상..... 사직예고..... 근속수당..... 임신, 출산 휴가..... 유급휴가..... 군복무..... 가족 관련 행사를 위한 휴가..... 정년퇴직수당..... 기타.....</p> <p>242 인력 공급의 댓가로 외부기업에게 지급하는 금액 파견근로자 공급 기업..... 기타 기업.....</p>	
3. 산업안전보건	31. 근무와 출장시 사고 311. 근무시 사고 빈도율 사고 수 근무한 시간 수 $\frac{\text{사고수}}{\text{근무한 시간수}} \times 10^6$	

항목	지표	비고
3. 산업안전보건	<p>312. 근무시 사고 심각도 근무하지 못한 일수..... 근무한 시간수..... 근무하지 못한 일수 $\times 10^3$ 근무한 시간수</p> <p>313. 당해 사업장에서 확인된 상시 무능력자(부분적 그리고 전반적)의 수</p> <p>314. 차명적인 사고수 근무시..... 출장시.....</p> <p>315. 근무 중단을 일으킨 출퇴근 사고수</p> <p>316. 사업장의 파견근로자 또는 서비스공급직근로자가 희생된 사고수</p> <p>317. 사회보호분담금의 비율과 금액 (근무시 사고)</p> <p>32. 구체적인 요인별 사고 분류 321. 심각한 위험 요인에 의한 사고 수(법률 32-40) 322. 낙하와 관련된 사고 수(법률 02) 3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위에 언급된 위험과 관련된 사고 제외)(법률 09-30) 324. 교통-운반-저장 관련 사고 수(법률 01,03,04와 06,07,08) 3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림자에 의한 사고 수(법률 05) 326. 기타 경우</p> <p>33. 직업병 331. 당해 사회보호제도에 신고된 직업병의 수와 명칭 332. 직업병 성격을 띠는 질병에 감염된 근로자 수 333. 근로자에 의해 직업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질차신고건수</p> <p>3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34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수</p> <p>35. 안전문제관련 지출 351. 당해 안전과 관련되어 교육된 인원 352. 노동법전 R.231-8을 따라 사업장에 적용된 안전 프로그램의 예산 평가 353. 전년도에 제출된 프로그램 실현율</p>	
4. 기타 근로 조건	<p>41. 근무 시간의 기간과 조정 411. 규정된 주당 평균 근로 시간 412. 보상휴가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법적 제도에 의해 관례 제도에 의해.....</p> <p>413. 개별적 근로시간제도의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p> <p>414. 파트타임종사 근로자 수: 20시간에서 30시간 사이 다른 형태의 파트 타임.....</p> <p>415. 당해주당 이틀연속의 휴일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p> <p>416. 년평균휴가일 수 (보상휴가 제외)</p> <p>417. 유급휴일 수</p> <p>42. 근로 조직과 내용 421. 조단위로 근무하는 인원 : 고정된 조..... 교대 조.....</p> <p>422(*) 50세 이상의 연속적 및 반연속적 근로자 423. 1976년 5월 10일 시행령에서 정의된 생산 라인 작업과 같은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는 근로자(남녀별 파악)</p>	<p>노동법전 L.498</p> <p>노동법전L.212-4-1 노동법전L.212-4-2</p>

항목	지표	비고
4. 기타 근로 조건	43. 근로의 물리적 조건 431. 작업장에서 85db 이상에 상시 그리고 정기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수 432(**). 작업장별로 소음카드를 작성한다. 433. 1976년 5월 10일 시행령이 정의하는 열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 수 434. 유독제품 채취, 분석, 측정 수 44. 근무 조직의 변형 441. 내용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근무 조직의 변형 시도 45. 근무 조건 개선 비용 451. 노동법전 L.437-2에서 정의하는,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 개선 프로그램의 예산 평가 452. 지난해 제출된 프로그램 실현율 46. 노동의 461. 건강진단 횟수 462. 재검진 횟수 463. 노동의가 작업장에서의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비율 47. 부적격 근로자 471. 노동의에 의해 배정받은 직종에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근로자 수 472. 비적격으로 재분류된 근로자 수	
5. 교육훈련	51. 평생교육훈련 511. 평생교육훈련에 할애된 금액의 임금총액대비 비율 512. 평생교육훈련에 할애된 금액 513. 피교육훈련자 수 남..... 여..... 514. 피교육훈련시간 수 보상..... 무보상..... 515. 피교육훈련 유형에 따른 분류 52. 개인교육훈련 휴직 521. 유급 개인교육훈련 휴직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522. 무급 개인교육훈련 휴직 혜택을 받은 근로자 수 523. 개인교육훈련 휴직이 거절된 근로자 수 53. 실습 531. 일년동안 체결된 실습계약 수	
6 노사관계	61. 종업원 대표 611. 선거 참가 (선거인단별) 612. 당해 회의에 사용된 시간의 총량 613. 당해 종업원대표와의 회의 수 6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협약의 서명일과 목적 615. 생산직근로자 중 개인교육훈련 휴직 혜택을 받은 인원 수 62.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621. 여러 형태의 종업원과의 회의에 할애된 시간수 622. 응대절차 623. 위로 전달되거나 아래로 전달되는 정보 절차와 수준 624. 개인상담제도	노동법전 L. 451-1

항목	지표	비고
6 노사관계	63. 절차 631. 일년동안 소송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모색한 경우의 수 632. 일년동안 기업이 문제가 되어 일어난 소송수 633. 당해 근로감독관의 재촉 횟수	
7 기타 기업관련 조건	71. 사회사업 711. 사업장 지출 712. 사업장위원회로의 불입금	

* 근로자 750명 이상의 사업장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

** 근로자 2000명 이상의 사업장들에 적용될 수 있는 지표

자료 : J.Igalens et J.-M. Peretti,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97, pp.116-121

부록2. 우리 나라 기업의 사회보고제도 지표체계(제안 사회보고지표)

항목	사회보고지표	n-2	n-1	n
1. 고용	11 인원 111 직급별 직군별 전체인원(12월31일) 112 당해 직급별 월평균인원 113 직급별 상용인원(12월31일) 114 직급별 계약직인원(12월31일) 115 성별 직급별 전체인원(12월31일) 116 연령별 직급별 · 성별 전체인원(12월31일) 117 근속년수별 직급별 · 성별 전체인원(12월31일) 118 학력별 직급별 · 성별 전체인원(12월31일) 119 국적별 직급별 · 성별 전체인원(12월31일) 한국 외국인			
	12 외부근로자 121 외부근로자 전체인원(12월31일) 122 당해 실습생(1주이상) 월평균인원(공고실습생, 인턴사원 등) 123 당해 외국인연수생 월평균인원 124 당해 파견근로자 월평균인원 125 당해 파견근로자 평균근무기간			
	13 당해 채용인원 131 불확정기간계약된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132 확정기간계약된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133 계절근로자 성별 채용인원 134 25세미만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135 55세이상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14 당해 이직인원 141 근속년수별 직급별 · 성별 전체이직인원 142 직급별 성별 의원퇴직인원 143 직급별 성별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인원 144 직급별 성별 정년퇴직과 조기퇴직인원 145 직급별 성별 수습기간 중의 이직인원 146 직급별 성별 사업경영상의 해고인원 147 직급별 성별 근로자귀책사유 해고인원 148 직급별 성별 다른사업장으로의 전출인원 149 사망인원			
	15 당해 승진과 전환배치 151 직급별 성별 승진 인원 152 직급별 성별 승진자 평균승진년수 153 직급별 성별 전환배치 인원 154 직급별 성별 전환배치자 평균체류 년수			
	16 당해 휴업 16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근로자 수 16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전체 시간 휴업수당을 받은 시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			
17 장애인	171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원(12월31일) 172 산재사고에 의한 성별 장애인원(12월31일)			

항목	사회보고지표	n-2	n-1	n
1. 고용	18 결근율 181 직급별 전체 결근일 182 직급별 질병에 의한 결근일 183 직급별 결근기간별 질병 결근일 184 직급별 산재사고로 인한 결근일 185 직급별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 186 직급별 유급휴가로 인한 결근일 187 직급별 병역 및 공무로 인한 결근일 188 직급별 무단결근일 189 직급별 기타원인으로 인한 결근일			
2. 임금	21 임금총액 211 직급별 · 성별 연간임금총액 212 직급별 · 성별 연간정액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구분) 213 직급별 · 성별 연간초과급여총액 214 직급별 · 성별 연간상여금등 특별급여총액 215 직급별 · 성별 연간성과배분 특별급여총액 216 직급별 · 성별 연간 평균임금 217 직급별 · 성별 월 평균임금 218 연간 평균임금계층별 수령인원 219 매월 임금총액 및 지급인원			
	22 임금계층 221 상위 10%와 하위 10%의 월평균임금 차 (하위 10%의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함) 222 직급별 · 성별 인당 연간임금의 지수(최하위 직급을 100으로 함)			
	23 임금계산방식 231 직급별 연봉제 인원 232 생산직 월급제 인원 233 생산직 시급 · 일급제 인원			
24 제수당	241 법정수당, 유급휴일수당 및 유급휴가수당 산재보상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토요격주휴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안식년수당 유급생리휴가수당 유급산전후휴가수당 군복무 등 공무수당 경조휴가수당 정년퇴직수당 242 초과근로로 인한 보상성격의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년차유급휴가보상 월차유급휴가보상 유급생리휴가보상			

항목	사회보고지표	n-2	n-1	n
2. 임금	243 종업원을 위한 기타제수당 특수작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휴가비 기타 25 외부근로자 지급총액 251 당해 인력공급의 댓가로 외부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과전근로자 공급기업 기타 기업 26 퇴직금 261 퇴직일시급 지급총액 및 지급인원 262 사외퇴직금 적립금총액 263 당해 연간사외퇴직금 적립금 264 퇴직금 중도정산총액 및 지급인원 265 퇴직연금 보험료총액 및 대상인원			
3. 복리후생	31 복리후생비총액 311 연간 복리후생비총액 312 연간 평균복리후생비 32 현물지급비용 321 현물지급비용총액 322 차사체품을 지급한 경우의 비용 33 법정복리비(근로자부담분제외) 331 법정복리비총액 332 의료보험료 333 산재보험료 334 국민연금의 비용 335 고용보험료 336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부담금 337 기타법정복리비			
	34 법정외복리비 341 법정외복리비 주거에 관한 비용 의료·보건에 관한 비용 식사에 관한 비용 문화·체육·오락에 관한 비용 보험료 지원금 경조 등의 비용 재행저축 등의 장려금 학비보조의 비용 보육비 지원금 근로자휴양에 관한 비용 종업원지주제도 지원금 기타 법정외 복리비 342 년간사내복지기금 신규 및 추가출연기금 34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총액			
	35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351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항목	사회보고지표	n-2	n-1	n
4. 산업안전보건	41 안전사고 411 사고자수 412 사고도수율 사고 수 실근로시간수 사고도수율 413 사고강도율 손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사고강도율 414 천인율((재해자수x10 ³)÷실근로자수) 415 외부근로자 사고자수 416 사고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상금 417 사고근로자에게 지급한 회사보상금 418 산재보험요율 및 산재보험료총액			
	42 원인별 사고분류 421 심각한 위험요인에 의한 사고 수 422 낙하와 관련된 사고 수 4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상기 언급된 위험과 관련된 사고제외) 424 교통-운반-저장 관련 사고 수 4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령자에 의한 사고 수 426 기타 경우			
	43 특성별 사고자분류 431 사고정도별 직급별 사고자수 432 성별 사고자수 433 연령별 사고자수 434 입사근속기간별 사고자 수 435 시간별 사고자 수 436 요일별 사고자 수 437 월별 사고자 수			
	44 안전관리비용 441 당해 안전교육 직급별 인원 442 지난해 제출한 안전개선계획 실현율 443 당해 안전관리비용			
	45 작업환경 451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전체인원 452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453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454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455 화학물질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456 당해 작업환경측정결과와 작업환경개선 지적 건수 457 지난해 제출한 작업환경개선계획 실현율 458 당해 작업환경측정비용 459 당해 작업환경개선비용			
	46 건강진단 및 보건관리 461 채용시 건강진단 근로자 수 462 일반건강진단 직급별 인원 463 특수건강진단 직급별 인원 464 재검진 근로자 직급별 인원 465 질병별 일반병유소견자 수 466 질병별 직업병유소견자 수 467 건강상 이유로 작업전환된 근로자 수 468 당해 건강진단비용			

항목	사회보고지표	n-2	n-1	n
4. 산업안전보건	47 산업보건의(의사인 보건관리자 포함) 471 산업보건의가 사업장에서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472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일반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혀진 근로자 수 473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직업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혀진 근로자 수 474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작업전환된 근로자 수 48 산업안전보건위원회 48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수			
5 기타작업조건	51 근로시간 511 규정된 주당평균 근로시간 512 연간 정상근로시간수 513 연간 초과근로시간수 514 선박적 근로시간제 직급별 인원 515 단시간근로자 직급별·성별 인원 1주당 15시간미만 인원 1주당 15~31시간미만 인원 1주당 31~44시간미만 인원 516 연간 유급휴일 수 517 연간 평균유급휴가일 수 518 일년내내 일주에 이틀연속의 휴일혜택을 받은 직급별 인원 519 유급휴가보상수당을 받은 직급별 인원 년차유급휴가보상수당 인원 월차유급휴가보상수당 인원 유급생리휴가보상수당 인원 52 근로조직과 내용 521 조단위로 근무하는 직급별 인원 : 고정된 조 교대 조 522 교대조에 근무하는 50세이상의 직급별 인원 523 생산라인작업과 같은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직급별 성별 인원 53 근로조직의 변형 531 내용개선을 위한 근무조직의 변형시도			
6. 교육훈련	61 교육훈련비총액 611 연간교육훈련비총액 612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훈련비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전직훈련 613 교육훈련 형태별 교육훈련비 자체훈련 위탁훈련 공동훈련 614 훈련비율, 직업훈련의무비용 및 직업훈련분담금총액 62 교육훈련 인원과 시간 621 교육훈련기간별 직급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622 6개월이상 장기연수중인 직급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623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에 재학 중인 인원(12월31일) 624 산업체위탁교육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인원(12월31일) 625 교육훈련세부형태별 직급별·성별 교육훈련 시간 63 실습 631 공고생 현장훈련(2+1) 인원			

항목	사회보고지표	n-2	n-1	n
7. 노사관계	71 노동조합 711 직급별 성별 조합원수(12월31일) 712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시간 713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수 7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서명일과 목적 및 내용 715 당해 노동쟁의 발생건수 716 당해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717 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수 718 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건수			
	72 노사협의회 721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인원 722 노사협의회 구성인원 723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와의 회의시간 724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와의 회의 수 725 당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의결일과 목적 및 내용			
	73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731 고충처리건수 732 인사상담건수 733 사기조사회수 734 제안건수 735 기타 커뮤니케이션제도 이용건수			
	74 정당한 절차 741 표창유형별 표창자수 742 징계유형별 징계자수 743 해고 이의제기절차 이용건수 744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소송건수 745 기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 746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 747 당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지도건수			

부록3. 우리 나라 노동통계조사현황

통계명칭	통계 종류	조사사항	작성 주기	승인 일자	간행물명	담당부서
1. 노동력관련 노동통계						
매월노동통계 조사	지정 조사 (표본)	근로자 종류별 성별 근로자수, 노동 일수, 실근로시간수, 정액 및 초과급여액, 특별급여총액, 임시 및 일용근로자에 관한 사항	매월	68. 4.18.	매월노동통계 조사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사업체노동실태 조사	지정 조사 (전수)	종사원에 관한 사항(종사상지위별 현황), 근로자의 성별, 연령별 현황, 월급여현황	연	68. 4.18.	사업체 노동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노동력유동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종사원 이동 현황, 입·이직자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성, 혼인상태, 연령, 종사상 지위, 학력, 전공분야, 직종, 기술기능정도 등)	반기	71.10.14.	노동력유동 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노동력수요동향 조사	일반 조사 (표본)	직종별 기술계근로자 및 기능계근로자의 현원, 부족인원, 감원예정인원, 공인자격증 소지자 및 자격 미소지기 능근로자수	연	76. 7.12.	노동력수요 동향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제조업 고용동향 전망조사	일반 조사 (표본)	사업체개요, 판단조사(생산액, 초과 근로시간, 전체근로자수, 상용근로자 수, 임시계절근로자수, 시간제근로자수), 생산액 증감이유, 고용측면의 대처방안, 인력과부족 상황, 근로자 채용계획, 고용조정 실시상황	분기	95. 1.12.	제조업고용 동향전망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영세사업장 근로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 사업체사항 : 사업체명, 조업일수, 임금인상, 생산품명, 사업체형태, 근로자수, 급여계산기간 ▶ 근로자사항 : 성명, 연령, 학력, 고용형태, 입직경로, 근속년수, 실 근로시간, 임금산정기준, 월급여액, 특별급여액	연	94.10.24.	영세사업장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신규인력채용동태 및 전망조사	일반 조사 (표본)	전국 100인이상 사업체의 직급별 채용계획 및 실적, 신규직원 채용선 발 기준	연	79. 7.24.	신규인력채용 동태 및 전망 조사	한국경총 조사부 경제조사과
중소기업조업상황 조사	일반 보고	정상조업, 조업단축, 휴·폐업현황 및 조업단축·휴·폐업의 사유	월	82. 8. 6.	중소기업동향	중소기업중앙회경제조사부통계과
중소제조업기술 개발 및 인력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기술개발동기, 전담조직형태, 인력현황, 투자규모, 애로사항 및 성과, 종업원 현황, 생산직 종업원수 및 부족 인원 인력난 극복 방법 등	2년	95. 7. 7.	중소제조업기 술개발및인력 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경제조사부통계과
장애인고용실태 조사	일반 조사 (전수)	성, 연령, 학력, 업종규모 및 유형등 급별 장애인 고용실태	연	96. 2.22.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보고서	노동부고용정책실장애인고용과

통계명칭	통계 종류	조사사항	작성 주기	승인 일자	간행물명	담당부서
2. 임금관련 노동통계						
단신근로자생계비 조사	일반 조사 (표본)	단신가구의 가계부 기장방식에 의한 소득과 지출의 항목별 조사, 월간 가계수지 총괄표, 주요품목 소비 및 재고량, 주거에 관한 사항(소유형태, 집세액)	연	89. 2.20.	근로자생계비 조사결과 보고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	지정 조사 (표본)	근로자 개인조사, 성, 연령, 혼인여부, 근무형태, 학력, 직종, 직급, 기술 기능정도, 근무년수, 경력년수, 근무 일수, 근로시간(정상 및 초과근무 시간), 월급여(정액급여, 초과급여) 액, 연간특별급여액	연	68. 4.18.	임금구조기본 통계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사업체임금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 사업체조사 : 사업체개요, 노동조합조직여부,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 등 ▶ 개인조사 : 성별, 혼인상태, 학력, 연령, 고용형태, 근속·경력년수, 임금산정기준, 임금기준액, 월급 여액, 연간특별급여액 등	연	89. 2.20.	임금실태분석 결과보고서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임금조정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광업, 제조업, 건설업 사업체 노동자의 평균 임금인상을, 직급별 종업원 수, 초임금 수준, 임금인상 결정요인	연	76.10. 2.	임금조정실태 조사	한국경총 조사부 경제조사과
제조업근로자 모델별임금조사	일반 조사 (표본)	제조업체의 학력별·직종별·근속연 수별 표준차임금수준, 사무직·생산 직에 대한 월급여액 및 상여금지급액 등	연	78. 4.27.	제조업근로자 모델별임금 조사보고서	대한상의 산업부 산업조사과
중소제조업임금 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 임금지급총액, 평균승진소요기간, 제조 업관련직종 임금지급현황 등	연	90. 9.22.	중소제조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중소기업중앙회경제조사부통계과
건설업임금실태 조사	일반 조사 (표본)	공사 및 광전자, 원자력, 문화재 부문 등에 관한 직종별 임금 및 임금상승 요인 등	반기	90.11.27.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대한건설협회 조사부 경제분석과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	일반 조사 (전수)	활동주체현황, 인력보유현황, 기술 자동급별 임금현황 등	연	94. 7.23.	엔지니어링 업체임금실태 조사보고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책실 사업부
3. 산업재해관련 노동통계						
산업재해조사	일반 보고	재해유발자 인적사항, 일시, 재해자 수, 재해원인, 발생형태·부위, 장해종류	수시	77. 2.17.	산업재해분석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기획과
광산재해통계	일반 보고	광산재해 유형(붕괴, 낙반, 가스, 출수, 화약 등)별 발생건수	월	76.11.30	광산재해통계 연보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광업진흥과

통계명칭	통계 종류	조사사항	작성 주기	승인 일자	간행물명	담당부서
사업종류별보험 적용징수상황보고	일반 보고	사업의 종류별 신규적용 사업장 수, 소멸사업장수, 산재보험 징수결정, 수납액 및 반환금 지급액	분기	77. 2. 17.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노동보험국 보험징수과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상황보고	일반 보고	업종별 급여종류별 수급자 수 및 수급 건수, 산업재해보험급여 지급금액, 장애급여 지급현황	월	86. 9. 25.	노동통계연감	노동부 노동보험국 재해보상과
의료기관별진료비 지급현황보고	일반 보고	요양환자 수, 1일 평균진료비(입원, 통원), 요양일수	분기	86. 9. 25.	미발간	노동부 노동보험국 재해보상과
근로자건강진단 실시상황보고	일반 보고	일반, 특수검진별 대상근로자 및 질병자 현황, 산업별 일반질병, 직업성 질병별 현황	연	86. 9. 25.	근로자건강 진단실시결과 분석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과
4. 노사관계 노동통계						
노사협조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노사협조실태 및 문제점, 노동조합 활동상황, 생산성, 임금 등에 대한 의식, 노사협의제 운영실태 등	수시	80. 5. 8.	노사협조실태 조사 보고서	한국생산성 본부 연구조사부
5. 기업체관련조건 노동통계						
기업체노동비용 실태조사	일반 조사 (표본)	급여지급연인원, 현금급여, 퇴직금, 모집비, 교육훈련비, 법정복리비, 법정외복리비, 기타 노동비용	연	82. 9. 6.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보고서	노동부 기획관리실 통계담당관

자료 : 통계청, 통계목록, 1997.1.

부록4. 제안된 사회보고지표와 노동통계조사지표 비교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1. 고용			
11 인원	<p>111 직급별 직군별 전체인원 (12월31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근로자 2) 관리·사무 및 기술근로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종류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종류별·성별) 1) 생산종사원 2) 관리, 사무 및 기술종사원 - 종사상 지위별 종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사상 지위별·성별) 1) 상용근로자 2) 임시 및 일용근로자 3) 유급임원 4) 개인업주 5) 무급가족 종사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상용근로자·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용명의 근로자 2) 임시·일용 명의 상용근로자 (계절근로자)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종사상지위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용근로자수 2) 임시및일용근로자수 3) 수습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근로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명의 근로자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근로자수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근로자수 	
	112 당해 직급별 월평균인원		
	113 직급별 상용인원(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근로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명의 근로자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근로자수 	
	114 직급별 계약직인원(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임시 및 일용근로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임시·일용명의상용근로자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임시및일용근로자수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115 성별 직급별 전체인원 (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근로자종류별 상용근로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근로자종류별 종사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상용근로자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종사상지위별 근로자수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관리직종사자 비율(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녀고용평등법 -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금지(동법 제6조) -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의 차별금지(동법 제7조) -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의 차별금지(동법 제8조)
	116 연령별 직급별·성별 전체 인원(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성별 종사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계층별 성별 상용근로자수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취업자 구성비(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고용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고용기준율(동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 고용보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안정사업 중 고령자 고용촉진장려금(동법시행령 제22조)
	117 근속년수별 직급별·성별 전체인원(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근속년수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근속비율(4-8) - 성별 근속연수 격차(4-56) 	
	118 학력별 직급별·성별 전체 인원(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학력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이직자조사 - 개인별 학력 	
	119 국적별 직급별·성별 전체 인원(12월31일) 한국..... 외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에 관한 사항 중 성별 외국인근로자수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근로자수 및 비율(4-7) 	
12 외부 근로 자	121 외부근로자 전체인원 (12월31일)		
	122 당해 실습생(1주이상) 월평균인원 (공고실습생, 인턴사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생 2+1 산학협동훈련 ▶ 인턴사원제도
	123 당해 외국인연수생 월평균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에 관한 사항 중 외국인근로자수(성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관련지침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24 당해 파견근로자 월평균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에 관한 사항 중 파견근로자수(성별)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 비율(4-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125 당해 파견근로자 평균근무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파견기간(동법 제6조)
13 당해 채용 인원	131 불확정기간계약된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근로자종류 및 성별 당월입직자수 및 신규채용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명의근로자 성별 신규로 채용된 자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동률(입직률)(4-18) 	
	132 확정기간계약된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일용명의상용근로자 성별 신규로 채용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법 - 지역고용촉진사업에 의한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동법시행령 제20조)
	133 계절근로자 성별 채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절근로자 신규로 채용된 자 	
	134 25세미만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입직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연령 	
	135 55세이상 직급별 성별 채용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입직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연령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 재고용비율(4-27) 	
14 당해 이직 인원	141 근속년수별 직급별·성별 전체이직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 근로자종류 및 성별 당월이직자수 및 해고·퇴직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퇴직 또는 해고된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성별 직급별 근속년수별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이동률(이직률)(4-18) - 성별 이직률비(4-58) 	
	142 직급별 성별 의원퇴직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직급별 성별 의원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사로의 전직 (2) 자기사업 및 기타 (3) 결혼, 출산, 육아 및 가사 (4) 군입대, 진학 	
	143 직급별 성별 고용계약기간의 만료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직급별 성별 고용계약 기간의 만료 	
	144 직급별 성별 정년퇴직과 조기 퇴직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별 직급별 성별 정년퇴직 	
	145 직급별 성별 수습기간 중의 이직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 예고해고의 적용예외 (동법 제35조) 5) 수습사용중의 근로자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15 당해 승진 과 전환 배치	146 직급별 성별 사업경영상의 해고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급별 성별 사업경영상 해고	▶ 근로기준법 - 해고 등의 제한 (동법 제30조) -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 조정(동법 제31조) ▶ 고용보험법 - 고용조정지원사업 중 인력재배치지원금 (동법시행령 제18조)
	147 직급별 성별 근로자귀책사유 해고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급별 성별 근로자귀책사유 해고	
	148 직급별 성별 다른사업장으로의 전출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사업체조사 - 상용근로자의 고용형태별 성별 동일회사내의 전출자	
	149 사망인원	▶ 노동력유동실태조사 이직자조사 - 개인별 직급별 성별 사망, 상병	
16 당해 휴업	151 직급별 성별 승진 인원		
	152 직급별 성별 승진자 평균승진 년수		
	153 직급별 성별 전환배치 인원		
	154 직급별 성별 전환배치자 평균 체류 년수		
17 장애 인	161 당해 부분휴업에 처한 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 휴업수당(동법 제45조) ▶ 고용보험법 - 고용조정지원사업 중 휴업수당지원금 (동법시행령 제17조)
	162 당해 부분휴업에 해당하는 전체 시간 휴업수당을 받은 시간 휴업수당을 받지 못한 시간		
	171 12월31일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원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 장애유형별 성별 장애인고용 현황 ▶ 사회지표 - 장애인고용비율(4-28) - 장애인 의무고용준수율(10-43)	▶ 장애인고용촉진법 - 장애인기준고용율 (동법 제35조 및 동법시 행령 제34조)
	172 12월31일 산재사고에 의한 성별 장애인원		
	181 직급별 전체 결근일	▶ 매월노동통계조사 - 실출근일수 1) 실정상출근일수 2) 실휴일근로일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실근로일수 1) 정상실근로일수 2) 휴일실근로일수 ▶ 소규모기업체근로실태조사 - 출근일수 ▶ 사회지표 - 월평균근로일수(4-34)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18 결근 율	182 직급별 질병에 의한 결근일		
	183 직급별 결근기간별 질병 결근일		
	184 직급별 산재사고로 인한 결근일		
	185 직급별 임신, 출산으로 인한 결근일		
	186 직급별 유급휴가로 인한 결근일		
	187 직급별 병역 및 공무로 인한 결근일		
	188 직급별 무단결근일		
	189 직급별 기타원인으로 인한 결근일		
2. 임금			
21 임금 총액	211 직급별·성별 연간임금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 정액 및 초과급여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현금급여총액(세금포함) 	
	212 직급별·성별 연간 정액급여 총액(기본급, 통상적수당, 기타수당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 월정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급 (2) 통상적수당 (3) 기타수당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월정액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본급 (2) 통상적수당 (3) 기타수당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정액 및 초과급여(12개월합계) ▶ 사회지표 - 기본급비율(4~42) 	
	213 직급별·성별 연간 초과급여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 월초과급여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월초과급여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정액 및 초과급여(12개월합계) 	
	214 직급별·성별 연간 상여금등 특별급여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 특별급여액 - 내역별특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여금등 특별급여 (2) 승급, 임금인상 등의 소급 추급분 (3) 기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개인별 연간특별급여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상여금등 특별급여(1년간)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21 임금 총액	215 직급별·성별 연간 성과배분 특별급여총액	▶ 매월노동통계조사 - 성과분별특별급여 - 내역별특별급여 (4) 성과배분특별급여	
	216 직급별·성별 연간 평균임금	▶ 노동통계연감 - 직종별·경력년수별·성별 월평균임금(42) - 직종별·성별·학력별 월평균임금(43)	
	217 직급별·성별 월 평균임금	▶ 노동통계연감 - 직종별·경력년수별·성별 월평균임금(42) - 직종별·성별·학력별 월평균임금(43)	
	218 연간 평균임금계층별 수령 인원	▶ 노동통계연감 - 성별·임금계층별·직종별 근로자수(40)	
	219 매월 임금총액 및 지급인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신고서 - 월별 총인원과 지급한 임금총액 ▶ 직업훈련부담금신고납부서 - 월별 인원과 지급한 임금총액	
22 임금 계층	221 상위 10%와 하위 10%의 월평균임금 차 (하위 10%의 월평균임금을 100으로 함)	▶ 사회지표 -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4-39) - 임금계층별 임금수준 (지니계수)(4-40)	
	222 직급별·성별 인당 연간임금의 지수 (최하위 직급을 100으로 함)	▶ 사회지표 - 임금수준 및 평균임금지수 (4-38) - 직종별 평균임금격차(4-44) - 성별 평균임금격차(4-46)	
23 임금 계산 방식	231 직급별 연봉제 인원		
	232 생산직 월급제 인원		
	233 생산직 시급·일급제 인원		
24 제수 당	241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에도 지불되는 법정수당, 유급휴일 수당 및 유급휴가수당 산재보상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주휴수당 토요격주휴무수당 유급휴일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년차유급휴가수당 안식년수당 유급생리휴가수당 유급산전후휴가수당 근복무 등 공무수당 경조휴가수당 정년퇴직수당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급여항목의 수당 및 지급기준	▶ 근로기준법 - 요양보상(동법 제81조) - 휴업보상(동법 제82조) - 장해보상(동법 제83조) - 유족보상(동법 제85조) - 장의비(동법 제86조) - 일시보상(동법 제87조) - 해고예고수당 (동법 제32조) - 휴업수당(동법 제45조) - 휴일(동법 제54조) -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7조) - 연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 - 생리휴가(동법 제71조) - 산전후휴가(동법 제72조)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24 제수 당	242 초과근로로 인한 보상성격의 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년차유급휴가보상 월차유급휴가보상 유급생리휴가보상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급여항목의 수당 및 지급기준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해고예고수당	▶ 근로기준법 -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동법 제55조) - 월차유급휴가(동법 제57조) - 연차유급휴가(동법 제59조) - 생리휴가(동법 제71조)
25 외부 근로 자 지급 총액	243 종업원을 위한 기타제수당 특수직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휴가비 기타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 급여항목의 수당 및 지급기준	
26 퇴직 금	251 당해 인력공급의 댓가로 외부 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파견근로자 공급기업 기타 기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파견계약 중 근로자파견의 대가 (동법 제20조)
31 복리 후생 비총 액	261 퇴직일시금 지급총액 및 지급 인원 262 사외퇴직금 적립금총액 263 당해 연간사외퇴직금 적립금 264 퇴직금 중도정산총액 및 지급 인원 265 퇴직연금 보험료총액 및 대상 인원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퇴직일시금 지급총액 - 퇴직일시금 지급인원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사외퇴직금적립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연간사외퇴직적립금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연간사외퇴직금	▶ 근로기준법 - 퇴직금제도(동법 제34조)
32 현물 지급 비용	311 연간 복리후생비총액 312 연간 평균복리후생비	▶ 노동통계연감 - 노동비용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45)	
33 법정 복리 비	321 현물지급비용총액 322 자사제품을 지급한 경우의 비용 331 법정복리비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현물지급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자사제품의 현물지급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복리비 총액 (근로자 부담분 제외) ▶ 노동통계연감 -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복리비(46)	▶ 의료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연금법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 법률 ▶ 근로기준법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33 법정 복리 비 근로 자 부담 분제 외	332 의료보험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의료보험료	▶ 의료보험법 - 보험료의 부담 (동법 제52조)
	333 산재보험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료(동법 제5장)
	334 국민연금의 비용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국민연금의 비용	▶ 국민연금법 - 연금보험료의 징수 (동법 제75조)
	335 고용보험료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고용보험료	▶ 고용보험법 - 보험료(동법 제6장)
	336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부담금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장애인고용촉진기금부담금	▶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 법률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납부 등(동법 제38조)
	337 기타법정복리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기타법정복리비	▶ 근로기준법 - 재해보상(동법 제8장)
34 법정 외복 리비	341 법정외복리비 주거에 관한 비용 의료·보건에 관한 비용 식사에 관한 비용 문화·체육·오락에 관한 비용 보험료 지원금 경조 등의 비용 재형저축 등의 장려금 학비보조의 비용 보육비 지원금 근로자휴양에 관한 비용 종업원지주제도 지원금 기타 법정외 복리비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외 복리비 (1) 주거에 관한 비용 (2) 의료·보건에 관한 비용 (3) 식사에 관한 비용 (4) 문화·체육·오락에 관한 비용 (5) 보험료 지원금 (6) 경조 등의 비용 (7) 재형저축 등의 장려금 (8) 학비보조의 비용 (10) 보육비 지원금 (11) 근로자휴양에 관한 비용 (12) 종업원지주제도 지원금 (13) 기타 법정외 복리비 ▶ 노동통계연감 -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법정외복리비(47)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관한 법률 - 사업주의 주택보조금 지원에 대한 비과세 (동법 제7조) ▶ 중소기업근로자복지진흥법 - 근로복지진흥기금 (동법 제3장)
	342 년간사내복지기금 신규 및 추가출연기금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외복리비 중 (9) 년간사내복지기금 신규 또는 추가출연기금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기금의 조성 (동법 제13조)
	343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총액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법정외복리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출연금총액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 기금의 회계 (동법 제16조)
35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351 보육시설설치 및 운영	▶ 사회지표 - 보육시설 수 및 보육아동현황 (10-33)	▶ 영유아보육법 - 보육시설의 설치 (동법 제7조) -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동법시행령 제14조)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4. 산업안전보건			
41 안전 사고	411 사고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도수율 · 강도율 및 천인율 ▶ 노동통계연감 - 산업(대분류)별 재해건수 및 재해자수(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의 책무 중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동법 제4조) - 사업주의 의무, 보고의무 (동법 제5조, 제10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법 제13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동법시행령 제10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동법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412 사고도수율 사고 수.... 실근로시간수.... 사고도수율 $(\text{사고수} \times 10^6) \div \text{실근로시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도수율 · 강도율 및 천인율 ▶ 노동통계연감 - 재해강도율 및 도수율(79) - 산업(대분류)별 재해건수 및 재해자수(81) ▶ 사회지표 - 재해발생률(4-53) 	
	413 사고강도율 손실근로일수.... 실근로시간수.... 사고강도율 $(\text{손실근로일수} \times 10^3) \div \text{실근로시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도수율 · 강도율 및 천인율 ▶ 노동통계연감 - 재해강도율 및 도수율(79) 	
	414 천인율 $(\text{재해자수} \times 10^3) \div \text{실근로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도수율 · 강도율 및 천인율 	
	415 외부근로자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 근로자파견계약 중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동법 제20조)
	416 사고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 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계연감 - 산업(대분류)별 산재보험급여 지급액(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급여(동법 제4장)
	417 사고근로자에게 지급한 회사 보상금		
	418 산재보험요율 및 산재보험료 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신고서 ▶ 노동통계연감 - 산업별 산재보험요율(75) - 산재보험료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보험료(동법 제5장)
42 원인 별 사고 분류	421 심각한 위험 요인에 의한 사고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의 책무 중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 관리에 관한 사항 (동법 제4조) - 사업주의 의무, 보고의무 (동법 제5조, 제10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동법 제13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동법시행령 제10조)
	422 낙하와 관련된 사고 수		
	423 기계로 야기된 사고 수 (상기 언급된 위험과 관련된 사고제외)		
	424 교통·운반·저장 관련 사고 수		
	425 움직이는 물건, 물체, 미립자에 의한 사고 수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426 기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동법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43 특성별 사고자 분류	431 사고정도별 직급별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정도별 재해발생 현황 ▶ 노동통계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대분류)별 재해건수 및 재해자수(81) ▶ 사회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재사망률(4-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정부의 책무 중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동법 제4조) - 사업주의 의무, 보고의무 (동법 제5조, 제10조) - 안전보건책임자 (동법 제13조) -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 (동법시행령 제10조) - 안전관리자의 직무등 (동법시행령 제13조) - 산업재해발생보고 (동법시행규칙 제4조)
	432 성별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재해발생 현황 	
	433 연령별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령별 재해발생 현황 	
	434 입사근속기간별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사근속기간별 재해발생 현황 	
	435 시간별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대별 재해발생 현황 	
	436 요일별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일별 재해발생 현황 	
	437 월별 사고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재해발생 현황 	
44 안전 관리 비용	441 당해 안전교육 직급별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교육 실시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동법 제31조) -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동법 제32조)
	442 지난해 제출한 안전개선계획 실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사업장 기술지도 결과 - 안전보건진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동법 제48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제49조의2) - 안전·보건진단(동법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동법 제51조)
	443 당해 안전관리비용		
45 작업 환경	451 유해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전체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보건상의 조치 (동법 제24조) - 유해물질의 표시 (동법 제39조)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비치등(동법 제41조) - 작업환경의 측정 (동법 제42조) - 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동법시행규칙 제93조)
	452 소음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453 고열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454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455 화학물질작업에 종사하는 직급별 인원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45 작업 환경	456 당해 작업환경측정결과 작업 환경개선 지적 건수	▶ 노동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 안전보건진단 실적	▶ 산업안전보건법 - 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동법시행규칙 제94조)
	457 지난해 제출한 작업환경개선 계획 실현율	▶ 노동부 -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항 사업장 기술지도 결과	▶ 산업안전보건법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동법 제48조) -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등 (동법 제49조의2) - 안전·보건진단(동법 제49조) - 안전보건개선계획 (동법 제51조)
	458 당해 작업환경측정비용		
46 건강 진단 및 보건 관리	459 당해 작업환경개선비용		
	461 채용시 건강진단 근로자 수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현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462 일반건강진단 직급별 인원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현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 산업안전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근로자 건강진단 (동법시행규칙 제5편 제2장)
	463 특수건강진단 직급별 인원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현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464 재검진 근로자 직급별 인원	▶ 노동부 - 건강진단 실시현황 ▶ 노동통계연감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상황(78)	
	465 질병별 일반병유소견자 수	▶ 노동부 - 질병별 일반병유소견자 수 현황	
	466 질병별 직업병유소견자 수	▶ 노동부 - 직업병 유소견건수 현황 ▶ 노동통계연감 - 질병종류별 직업병유소견건수(80) ▶ 사회지표 - 직업병유병근로자율(4-52)	▶ 산업안전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467 건강상 이유로 작업전환된 근로자 수		▶ 산업안전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동법시행규칙 제105조) - 산업보건의(동법 제17조) - 산업보건의의 직무등 (동법시행령 제22조)
	468 당해 건강진단비용		▶ 산업안전보건법 - 건강진단(동법 제43조) - 건강진단비용 (동법시행규칙 제101조)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47 산업 보건 의(의 사인 보건 관리 자 포함)	471 산업보건의가 사업장에서 분석과 개입에 할애한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보건관리자 등 (동법 제16조) - 산업보건의(동법 제17조) - 산업보건의의 직무등 (동법시행령 제22조)
	472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일반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혀진 근로자 수		
	473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직업병에 이환된 것으로 밝혀진 근로자 수		
	474 산업보건의의 상담에 의하여 작업전환된 근로자 수		
48 산업 안전 보건 위원 회	48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상시 100인 이상 산업안전 보건위원회설치 및 상시 1000인 이상 별도의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설치 (동법 제19조, 동법시행 령 제2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매 3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임시회의 개최가능 (동법시행령 제25조)
5. 기타작업조건			
51 근로 시간	511 규정된 주당평균 근로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 실출근시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근로시간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실근로시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상실근로시간수 ▶ 노동통계연감 - 직종별, 성별, 학력별 월근로시간수(43) - 직종별 월근로시간수(44) ▶ 사회지표 - 성별 근로시간 격차(4-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 근로시간(동법 제49조)
	512 연간 직급별 · 성별 평균 정상 근로시간수		
	513 연간 직급별 · 성별 평균 초과 근로시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 실출근시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초과근로시간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 실근로시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2) 초과실근로시간수 ▶ 사회지표 - 성별 근로시간 격차(4-57) 	
	514 선택적 근로시간제 직급별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지표 - 재택근로자 비율(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 선택적 근로시간제 (동법 제51조)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51 근로 시간	515 단시간근로자 직급별·성별 인원 1주당 15시간미만 인원 1주당 15~31시간미만 인원 1주당 31~44시간미만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고용에 관한 사항 중 성별 단시간근로자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2) 1주당 15~31시간미만 근로자 3) 1주당 31~44시간미만 근로자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타임근로자 비율(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동법 제25조)
	516 연간 유급휴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일(동법 제54조)
	517 연간 평균유급휴가일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평균유급휴가일수(4-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차유급휴가(동법제57조) - 연차유급휴가(동법제59조) - 생리유급휴가(동법제71조)
	518 일년내내 일주에 이틀연속의 휴일혜택을 받은 직급별 인원		
52 근로 조직 과 내용	519 유급휴가보상수당을 받은 직급별 인원 년차유급휴가보상수당 인원 월차유급휴가보상수당 인원 유급생리휴가보상수당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차유급휴가(동법제57조) - 연차유급휴가(동법제59조) - 생리유급휴가(동법제71조)
	521 조단위로 근무하는 직급별 인원 : 고정된 조 교대 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월노동통계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형태(교대제)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대제실시여부 2) 교대제대상 (전체근로자, 생산근로자, 사무직근로자) 3) 교대실시방법 ① 2교대제, ② 3교대제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개인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근무자 중 교대제 실시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대제실시하지않음 2) 2교대제, 3) 3교대제 4) 격일제 	
	522 교대조에 근무하는 50세이상의 직급별 인원		
53 근로 조직 의 변형	523 생산라인작업과 같은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직급별 성별 인원		
	531 내용개선을 위한 근무조직의 변형지도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6. 교육훈련		
	611 연간교육훈련비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분담금신고납부서 및 훈련비용정산자료 - 직업훈련 등에 사용한 비용 ▶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교육훈련비 (직업훈련분담금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기본법 - 직업훈련분담금 (동법 제5장 제2절) ▶ 고용보험법 -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사업내직업훈련지원사업 (동법 제22조) - 직업능력개발사업 중 교육훈련 등 지원사업 (동법 제23조)
61 교육 훈련 비총 액	612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비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전직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분담금신고납부서 및 훈련비용정산자료 -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 정산내역서 ▶ 노동부 - 훈련과정별 사업내직업훈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기본법 -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 (동법 제5장) ▶ 고용보험법 - 고용안정사업 중 전직 훈련지원금(동법 제16조)
	613 교육훈련형태별 교육훈련비 자체훈련.... 위탁훈련.... 공동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분담금신고납부서 및 훈련비용정산자료 -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 관련사업 정산내역서 ▶ 노동부 - 훈련형태별 사업내직업훈련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기본법 -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 (동법 제5장)
	614 훈련비율, 직업훈련의무비용 및 직업훈련분담금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분담금신고납부서 및 훈련비용정산자료 - 훈련비율 - 정산분담금, 추가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기본법 -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 (동법 제5장)
	621 교육훈련기간별 직급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지표 - 직업훈련자수(4-30) - 재훈련수료자 지수(4-31) - 전직훈련수료자 지수(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훈련기본법 - 사업주의 직업훈련의무 (동법 제5장)
62 교육 훈련 인원 과 시간	622 6개월이상 장기연수중인 직급 별·성별 교육훈련 인원		
	623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학급에 재학 중인 인원(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계연감 - 학교급별 산업체 부설학교 및 야간특별학급 현황(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산업체부설학교 및 특별 학급제도
	624 산업체위탁교육 및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인원(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산업체위탁교육제도 및 특별학급제도
	625 교육훈련세부형태별 직급별· 성별 교육훈련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직업훈련고시 - 훈련과정별 훈련시간
63 실습	631 공고생 현장훈련(2+1)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공고생현장훈련(2+1)제도

	522 교대조에 근무하는 50세이상의 직급별 인원		
	523 생산라인작업과 같은 반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직급별 성별 인원		
53 근로 조직 의 변형	531 내용개선을 위한 근무조직의 변형시도		

항목	기본틀(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7. 노사관계			
71 노동 조합	711 직급별 성별 조합원 수 (12월3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체노동실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수 ▶ 노동력수요동향조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수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 사업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노동조합 조합원수 ▶ 노동통계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 사회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조직률(4-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동법 제2장)
	712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섭 등의 원칙 (동법 제30조)
	713 당해 노동조합과의 회의 수		
	714 당해 기업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의 서명일과 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협약(동법 제31조) ▶ 고용관계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등과 협의사항 - 휴업수당지원금 (동법 시행령 제17조) - 전직훈련지원금 (동법 시행령 제18조) - 인력재배치지원금 (동법 시행령 제19조)
	715 당해 노동쟁의 발생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계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분규발생건수(5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정의전치(동법 제45조)
	716 당해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계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별 근로손실일수(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쟁의행위(동법 제4장)
	717 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노동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유형별 판정결과 - 행정소송 사건 처리현황 ▶ 노동통계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위원회 사건처리건수(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노동행위 (동법 제6장)
	718 당해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건수		
72 노사 협의 회	721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의 선출(동법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722 노사협의회 구성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통계연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협의회 설치수(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회의 구성 (동법 제6조)

항목	기본률(사회보고)의 개별지표	한국의 노동통계 및 사회지표	한국의 제도적 근거
72 노사 협의 회	723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와의 회의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회의 : 매3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임시회의 개최 가능 (동법 제12조)
	724 노사협의회 및 위원회와의 회의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매3월마다 정기회의 개최, 임시회의 개최 가능 (동법시행령 제25조)
	725 당해 노사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의결일과 목적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동법제19조)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동법제20조) - 노사협의회 보고사항 등 (동법 제21조)
73 정보 와 커뮤 니케 이션	731 고충처리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고충의 처리(동법 제27조)
	732 인사상담건수		
	733 사기조사회수		
	734 제안건수		
	735 기타 커뮤니케이션제도 이용 건수		
	741 표창유형별 표창자수		
74 정당 한 절차	742 징계유형별 징계자수		
	743 해고 이의제기절차 이용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 해고 등의 제한 (동법 제30조)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동법 제33조)
	744 부당해고를 이유로 한 구제 신청 및 소송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유형별 판정결과 - 행정소송 사건 처리현황 ▶ 노동통계연감 - 노동위원회 사건처리건수(61) 	
	745 기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		
	746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한 소송건수		
	747 당해 근로감독관에 의한 지도 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부 - 정기감독 및 수시감독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기준법 - 근로감독관의 권한 (동법 제105조)

참 고 문 헌

■ 국내문헌

- 경제정의연구소(KEJI)(1993, 1994, 1996, 1997), 「한국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
- 경제정의연구소(KEJI)(1995),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대토론회」 .
- 공병호·최승노(1996), 「기업윤리강령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 한국경제연구원.
- 김대모(1991), 「기업복지제도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김식현(1986), 「한국적 경영참가제도의 모형개발」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 김식현·정재훈(1995), 「노사관계론」 , 학현사.
- 김형배 외(1997), 「노동관계법연구」 , 한국경영자총협회.
- 김형배(1991), 「노동법연구」 , 박영사.
- 노동부(1996), 「1996 기업체노동비용조사」 .
- 노동부(1996), 「1995 영세규모사업체 근로실태조사보고서」 .
- 노동부(1997), 「1996 매월노동통계조사특별조사보고서」 .
- 노동부(1997), 「1996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
- 노동부(1997), 「1997.3. 노동력수요동향조사보고서」 .
- 노동부(1997), 「1997년 알기쉬운 노동통계」 .
- 노동부(1997), 「96 노동백서」 .
- 노동부(1997), 「제27회 노동통계연감」 .
- 노동부(1998), 「1997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
- 노동부(1998), 「1997 제조업고용동향전망조사보고서」 .
- 노동부(1998), 「1997년 상반기 노동력유동실태조사보고서」 .
- 박기찬(1990), 「현대기업입문」 , 한국경제신문사.
- 박기찬(1999),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를 위한 사회감사론」 , 한국능률협회.
- 박찬용(1997), 「프랑스의 근로자복지제도」 , 한국노동연구원.
- 신유근(1994),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경쟁력 강화”, 「KEJI 제3회 연구조사보고서」 , pp.7 ~24.
- 신유근(1994), 「현대의 기업과 사회」 , 경문사.

- 이효익(1993), 「현대회계감사론」, 무역경영사.
- 전현중(1997), 「프랑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연구센터.
- 정재훈(1994), “한국기업의 인사·노무감사 시스템 개발”, 「인하대경영논집」 제1권 제2호, pp.54-114.
- 최정철(1998), 「한국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논문.
- 최종태(1984), 「기업의 목적과 책임」, 기업체정화추진위원회.
- 최종태(1989), 「한국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한 연구」, 상공회의소.
- 최종태(1996), 「근로자 참가의 모형과 선택」, 한국경영자총협회.
- 통계청(1996), 「한국통계조사현황」.
- 통계청(1997), 「1997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1997), 「통계목록」.
- 통계청(1998), 「주요통계지표해설」.
- 한국경영자총협회(1997), 「노동법해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5), 「한국의 사회지표 체계개편 연구」.
- 한정화(1994), “기업의 사회적 성과평가”, 「KEJI 제3회 연구조사보고서」 pp.25-34.

■ 구미문헌

- Carrol, A. B. (1979), "A Three-diment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4, No.4, pp.497-505.
- Carrol, A. B. (1991),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Measurment : A Commentary on Methods for Evaluating an Elusive Construct", In J. E. Post, (ed.), *Research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Policy*, Greenwich, CT : JAI Press, Vol.12, pp.385-401.
- Clarkson, M. B. E. (1988),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in Canada, 1976-1986", In L. E. Preston, (ed.), *Research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Policy*, Vol.10, (Greenwich, CT : JAI Press), pp.241-246.

- Clarkson, M. B. E. (1991), "Defining, evaluating, and managing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 The stakeholder management model", In J. E. Post, (ed.), *Research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Policy*, Greenwich, CT : JAI Pressm, Vol.12, pp.331-358.
- Clarkson, M. B. E. (1995), "A stakeholder framework for analyzing and evaluating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0, No.1, pp.92-117.
- Freeman, R. E. (1984), *Strategic Mnagement, A Stakeholder Approach*. Boston : Pitman/Ballinger.
- Freeman, R. E., & Reed, D. L. (1983), "Stockholders and Stakeholders : A New Perspectives on Corporate Governance",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25, No.3, pp.88-106.
- Igalens, J. et Peretti, J.-M. (1997), *Le Bilan Social de L'Entrepris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Peretti, J.-M. (1991), *Ressoureces Humaines*, Paris : Librairie Vuibert.
- Plisson, C et Chamussy, Y. (1997), *Le Social*, Paris : Editions Eska.
- Research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and policy, 1978~1993(JAI RESS INC.).
- Sethi, S. P. (1979), "A Conceptual Framework for Environmental Analysis of Social Issues and Evaluation of Business Response Patterns",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4, No.1, pp.63-74.
- Wood, D. J. (1991a),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revisited",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16, No.4, pp.691-718.
- Wood, D. J. (1991b), "Social Issues in Management : Theory and Research in Corporate Social Performance", *Journal of Management*, Vol.17, No.2, pp.383-1406.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Reporting System in Korean Companies -Based on the French Bilan Social System-

Kichan Park*
Jungchul Choi**

ABSTRACT

On the overall of management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realm of performance, social aspect has been relatively neglected not only in Korea but in the developed countries. Meanwhile, to overcome the crisis of legitimacy caused by the lack of social responsibility or/and social responsiveness of modern companies, it is needed for survival to make a great effort to evaluate the outcomes of social activities in organization.

This research, with the help of French 'Bilan Social' system, aims to develop an institutionalized model concerning social reporting system in Korean context. For the comparison between the Bilan Social index with Korean statistical indexes, we verified all the indicators published as KEJI Index, Korea Labor Statistics, Social Indicators etc(details are shown in the appendix of this paper).

From the result, we could find out that about 63% of proposed indexes(111/177) are directly applicable as those for social performance

* Professor, INHA University

** Senior Researcher, IDRI

appraisal. This means that the Social Reporting Model can be easily established in Korea (we proposed also Korean Social Reporting Example in the appendix), if we develop more integrated indexes which are still dispersed to several related institutions.